





## 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하 정 훈\*

###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업무현장에서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이 현재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수경비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현장전문가 7명에게 면담 조사를 실시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특수경비업무를 몸소 수행하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현재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 제도는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이 요구된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 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한 분야별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주제어 :** 특수경비업무, 특수경비원, 민간경비, 경비업법, 현장전문가

\* 중원대학교 경호학과 조교수

| 목 차 |
|-----|
|-----|

- |  |
|--|
| I. 서 론<br>II. 이론적 배경<br>III. 연구 방법<br>IV. 결과 및 분석<br>V. 논의 |
|--|

## I. 서 론

우리나라는 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놀라운 경제성장을 이루었고, 국민들은 더욱더 편리함과 다양한 욕구의 충족을 원하고 있다. 한국의 치안 환경은 분단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선진국들과 비교하여도 뒤쳐지지 않을 만큼에 안전국가임을 자랑 할 수 있다.

이는 국가중요시설의 경우에도 2001년 특수경비원제도가 신설되어지면서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업무를 안전하게 수행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공포감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테러발생 국가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을 벗어나 유럽·북미에서 아시아지역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어느 지역을 테러로부터의 안전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기에 이르렀다.

이에 현 정부에서는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을 제정 후 시행하고 있다(법률 제14071호).

하지만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아직도 개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얘기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 중에는 그 동안의 특수경비업무관련 연구물들이 특수경비원 교육훈련 위주의 연구 업적이 대부분이며, 제도적으로나 운영적 측면에서도 미비한 부분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한국의

특수경비산업은 특수경비업무와 관련된 각각의 요소들에 의하여 관련 법규와 이론 이상으로 유기적으로 변화하며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특수경비산업과 연관되어진 법령이나 교육 등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데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경비업무 일선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면접을 바탕으로 한국 특수경비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한국 특수경비산업이 성장하고 더 나아가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이 더욱 발전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이론적 배경

### 1. 특수경비업무의 개념 및 현황

우리나라의 민간경비산업은 경비업법에 의해 개념과 업무의 형태를 정의 하고 있다.

현행 경비업법 제2조(정의)에서는 “경비업”을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 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경비업무란 공항(항공기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중요시설의 경비 및 도난·화재 그 밖의 위험발생을 방지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특수경비업무는 2001년 4월 7일 개정에 의하여 경비업법에 추가되어져서 현재까지 경비업무의 한 영역을 형성하고 있다(경비업법 법률 제6467호).

〈표 1〉 한국 경비업 현황

(2015년 12월 31일 기준)

| 구 분   | 업체 수  | 업종 계  | 시설경비  | 호송경비 | 신변보호 | 기계경비 | 특수경비 |
|-------|-------|-------|-------|------|------|------|------|
| 2015년 | 4,449 | 5,203 | 4,338 | 38   | 540  | 146  | 141  |

(자료: 경찰청(<http://www.police.go.kr>))

<표 1>에서 보듯이 한국은 4,449개의 경비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고, 특수경비 업무를 허가받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비업체의 수도 141개의 경비업체에서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전체 민간경비 활동 분야를 보면 약 80%는 아직 인력위주의 건물이나 아파트 경비 등의 시설경비이고, 그 이외 신변보호 12.5%, 기계경비 3.5%, 특수경비 2.1%, 호송경비 1.2%이다(석청호, 2010).

## 2. 특수경비업무의 특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업무를 수행하던 청원경찰제도는 과도한 인건비용 및 비효율적 인력 운용, 청원경찰 연령의 고령화 등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제도를 모색한 결과 특수경비제도가 2001년에 경비업법에 신설되어지게 된다.

특수경비원들은 근무지에서 총기를 휴대하여 근무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즉, 국가중요시설의 경비를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한 한도 안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① 무기 또는 폭발물을 소지하고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자가 특수경비원으로부터 3회 이상 투기 또는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하면서 계속 항거하는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② 국가중요시설에 침입한 무장간첩이 특수경비원으로부터 투항을 요구받고도 이에 불응한때로 제한된다(경비업법 제14조 제8항).

이러한 특수경비원들은 2002년에 인천국제공항의 경비업무를 시작으로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경비업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특수경비업무가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사회적 활동이지만, 또한 국가의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및 방호업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기에 업무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현장전문가들에게 자료 수집을 위한 면접 시 범위와 내용은 개인적 특성인 경우 양미진, 이동훈, 고흥월, 김영하, 남현주(2012)의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 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에 사용한 내용을 교육적 측면은 하정훈(2015)을 바탕으로 구성하였고, 법·제도적 측면은 김태환, 박옥철(2005)을 참고하여

전문가 회의 시 재구성하였다.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은 백승민(2014)의 연구를 참고로 재구성하였다.

### 3. 선행연구의 검토

특수경비업무에 있어서 현장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현장의 문제점들과 발전방안을 제시한 연구는 거의 극소수이다. 세부적으로 특수경비업무만을 규정하지는 않고 전체적인 민간경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들을 통하여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나 발전방안을 논의한 연구는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으며, 특수경비업무관련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실정이다.

특수경비업무에 한정되어진 연구 중 최근의 연구로 조민상·오윤성(2015)은 핵 안보시설에 존재하고 있는 위협요소를 분석하여 국가중요시설의 특수경비원 선발 및 고용, 교육 훈련, 무기 확보 및 사용, 급여, 처우, 노동조건의 문제, 관리·감독의 문제점을 개선하여야한다고 하였다.

박옥철과 김태환(2011)은 초임 특수경비원들의 직업사회화과정에서 다양한 경험요소를 규명하여 특수경비원의 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인열(2011)은 특수경비원과 공항경찰의 상호의존성 지각에 따른 관계결속 및 성과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경비주체별로 상호의존성, 관계결속, 성과에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관계결속은 상호의존성과 성과의 관계를 강화시켜 주는 중요한 매개변수로 나타났다.

박동균과 김태민(2009)은 특수경비원들에 대한 신입 교육훈련의 실태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연구결과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과 관련하여 민간경비 교육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특수경비원의 전문화를 위한 정책으로 특수경비원에 대한 자격제도의 마련을 해결책으로 제시하였다.

최은하·유영재·이상빈(2008)은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 운영 실태를 알아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의 교육훈련체계를 재정비하고 심화하여 한다고 하였다.

정재국(2012)은 북한군 특수부대 테러 대비 특수경비원의 방호능력이 향상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특수경비원 정예화가 시급하다고 얘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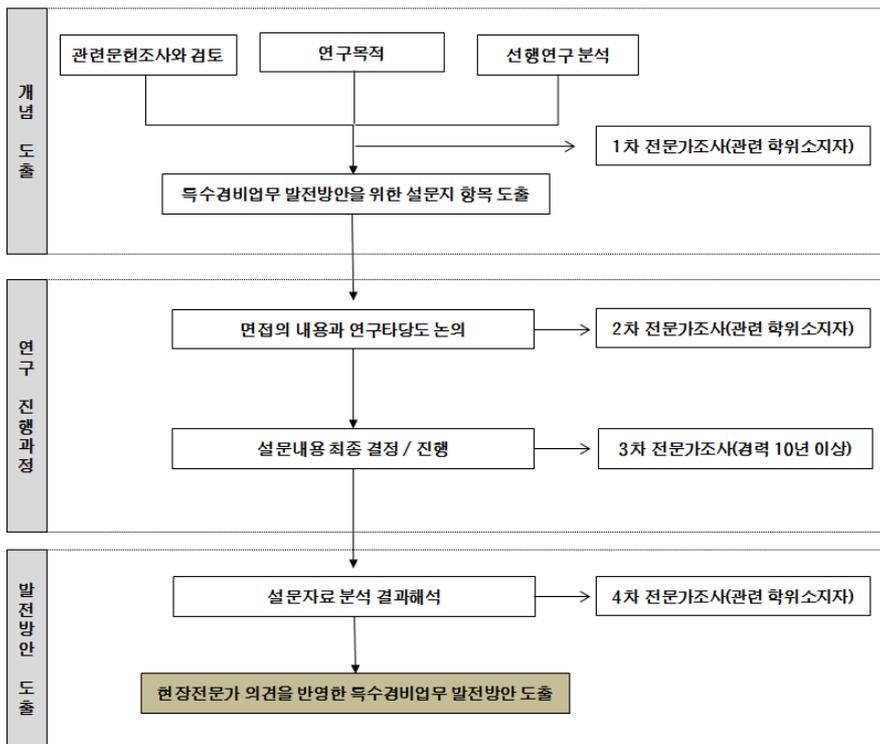
본 연구는 누구보다 현재 한국의 특수경비업무에 대하여 잘 인지하고 특수경비업

무현장에서 다년간 근무를 계속 해 오고 있는 현장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한국 특수경비업무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의 틀

본 연구는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특수경비업무 분야의 발전방안을 도출하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은 연구의 틀에 따라 진행되었다.



<그림 1> 연구의 틀

본 연구에서는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집단을 2개의 집단으로 구성하여 각 집단의 특성과 연구목적에 맞도록 4차례의 전문가회의를 집행하였다.

첫 번째 전문가집단은 연구타당도를 높이기 위하여 경호안전학 박사 2명, 법학박사 1명, 체육학 박사 1명, 관광학 박사 1명 등 총 5명으로 구성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1-2차 전문가 회의를 통해 만들어진 설문문항을 가지고 두 번째 전문가집단인 현장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3차 전문가조사에 활용된 설문은 자유응답형, 서술형 문항으로 진행하였다.

즉 1차 전문가회의에서는 연구대상자의 범위와 연구방법, 면접의 범위를 논의하였고, 2차 전문가회의에서는 면접의 내용과 연구의 타당도를 논의하였고, 3차는 현장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4차 전문가회의에서는 현장 전문가들이 응답한 설문자료 분석과 결과해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유의표집법(purposive sampling method)을 이용하여 설문문항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표 2>의 관련학위 소지자 5인의 전문가 집단과 경력 10년 이상의 현장전문가로 이루어진 특수경비원 7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표 3>은 선정된 전문가집단의 인적사항이다.

또한 현장 전문가집단의 근무경력은 10년 이상의 경력자로 선정하였다. 이는 10년 이상 특수경비업무에 종사하였을 때 전체적인 업무 및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도와 자립적 판단이 가능한 현장전문가로 사료되어 본 연구의 목적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대상이 된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이다.

<표 2> 전문가집단 1(관련분야 학위소지자)

| 이름  | 성별 | 연령 | 학력      | 전공 분야     |
|-----|----|----|---------|-----------|
| PHY | 남  | 34 | 경호안전학박사 | 정치인 신변보호  |
| KTY | 남  | 59 | 경호안전학박사 | 경호보안학과 강사 |
| KDB | 남  | 32 | 법학박사    | 경호학과 강사   |
| KKB | 남  | 35 | 관광학박사   | 관광학과 교수   |
| KCH | 남  | 64 | 체육학박사   | 경호학과 교수   |

〈표 3〉 전문가집단 2(경력 10년 이상의 특수경비분야 현장전문가)

| 이름  | 성별 | 연령 | 학력   | 경력  | 결혼 | 전문분야              |
|-----|----|----|------|-----|----|-------------------|
| KKJ | 남  | 34 | 전문대졸 | 11년 | 기혼 | 공항 특수경비           |
| KTK | 남  | 33 | 전문대졸 | 10년 | 미혼 | 공항 특수경비           |
| LSW | 남  | 38 | 대졸   | 11년 | 미혼 | 정유시설 특수경비 / 경비지도사 |
| KIS | 남  | 36 | 대졸   | 12년 | 기혼 | 서울역 특수경비          |
| JSM | 남  | 37 | 대졸   | 10년 | 기혼 | 정유시설 특수경비         |
| HSH | 남  | 42 | 대졸   | 13년 | 기혼 | 공항/정유시설 특수경비      |
| LES | 여  | 39 | 고졸   | 11년 | 미혼 | 발전소 특수경비          |

### 3.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표본의 조사기간은 2016년 4월 11일 ~ 2016년 7월 15일에 걸쳐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관찰과 심층면담기법을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참여관찰은 직접참여와 간접참여로 이루어졌고, 연구대상자들에게 비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한 후에 반 구조화된 면담을 실시하였다. 또한 전문가 회의를 3회에 걸쳐 실시하면서 특수경비업무의 교육적 측면, 법·제도적 측면,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 측면별로 구성된 문항을 토대로 면접의 범위 및 내용을 도출하였다. 심층면담은 개별면담을 실시하였으며 면담에서 자료수집이 불충분한 부분은 E-mail 및 전화를 이용하여 추가로 보충하였다. 본 연구의 표본설계는 <표 4>와 같다.

〈표 4〉 표본설계

| 표본                              | 유의표집법을 통해 선정된 각각 5인과 7명의 관련 전문가 |                             |
|---------------------------------|---------------------------------|-----------------------------|
| 조사<br>기간                        | 1차 면담(관련분야 학위소지자)               | 2016년 4월 11일 - 2016년 4월 29일 |
|                                 | 2차 면담(관련분야 학위소지자)               | 2016년 5월 6일 - 2016년 5월 26일  |
|                                 | 3차 면담(경력10년 이상 현장전문가)           | 2016년 5월 31일 - 2016년 6월 13일 |
|                                 | 4차 면담(관련분야 학위소지자)               | 2016년 6월 24일 - 2016년 7월 15일 |
| 표본크기 5(7), 회수표본 5(7), 유효표본 5(7) |                                 |                             |

또한, 선행연구와 관련문헌연구 및 1-2차 전문가조사를 통하여 구성되어진 현장 전문가집단 면담에 사용한 면접 범위 및 내용은 <표 5>와 같다.

〈표 5〉 면접의 범위 및 내용

| 하위요인         | 면접 내용  | 연구근거                   |
|--------------|--|------------------------|
| 개인적 특성       | 성별, 연령, 학력, 근무경력, 결혼유무, 전문분야   | 양미진 외 (2012)           |
| 교육적 측면       | 1. 특수경비원의 신입교육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br>2. 특수경비원의 직무교육은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br>3. 특수경비원에게 필요한 교육은 무엇인가? | 하정훈 (2015)<br>참고하여 재구성 |
| 법·제도적 측면     | 1. 특수경비업무와 관련된 경비업법은 알맞게 제·개정 되어졌는가?<br>2. 특수경비업무와 관련된 경비업법이 개정 되어져야 될 내용은 무엇인가?               | 김태환·박옥철 (2005)         |
| 관계기관 상호협력 측면 | 1.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은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가?<br>2. 한국경비협회는 효율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가?                                | 백승민 (2014)             |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는 <그림 1> 연구의 틀에서 알 수 있듯이 문헌연구와 선행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수집한 후 선정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응답 및 수집한 자료를 각각의 요인별로 요약하였다. 그리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이론을 도출하는 질적 연구방법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자들로부터 심층면접 자료를 받고서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전사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각 각의 하위요인별로 내용을 재정립한 후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 IV. 결과 및 분석

### 1. 특수경비업무의 교육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 1) 경비원 신입교육

특수경비원들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한 신종 범죄의 등장 및 치밀한 범죄수법으로부터 국가중요시설의 안전을 책임져야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에 특수경비원들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투철한 사명감과 전문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다. 하지만 특수경비원들은 현실성과 전문성이 부족한 신입교육을 이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입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전문가 KIS는

“특수경비원들의 신입교육은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업무와 연관성이 거의 없는 것 같다. 비록 특수경비원들이 배치되어 근무하게 되는 국가중요 시설마다 업무상의 차이는 존재 하겠지만, 공통적으로 실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내용을 바탕으로 산업현장과 연관되어진 실무위주의 교육이 이루어 졌으면 한다.”

라고 산업현장과 연관된 교육프로그램의 전환을 제시해 주었으며,

현장전문가 LES도

“법정 교육시간은 88시간인데 이시간은 매우 긴 시간이다. 현행 경비업 법에 규정한데로 업무 투입 전에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면 시간을 줄이고 교육내용 또한 실무위주로 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KKI는

“88시간의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시간에 실무에서 필요 시 되는 교육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 특수경비원들은 업무의 영역이 보다 전문화 세분화 되어졌는데, 신입교육은 자격을 부여하기 위한 통과의례식의 교육처럼 느껴진다.”

현재의 신입교육이 산업의 발전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원·박주현(2007)은 수업시간 때우기 식의 교육방법을 지양하고, 교육훈련방법 역시 토론 및 토의식, 현장실습, 강의실 강의 등 다양한 방식의 수용으로 주입식 교육방법으로부터 벗어날 필요가 있다.

현장전문가 LSW는

“신입교육기간은 약 2주간 이루어지고 있는데, 2~3일 정도를 줄여서 정말 필요한 내용위주로 압축시켜서 진행 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프로그램 중에는 도움이 되는 부분도 일부 있지만, 상당 수 시간을 채우기 위한 교육이 행해지고 있고 이는 교육의 질과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 되어 진다.”

라고 현행 교육프로그램의 시간조정과 교육의 질 향상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현장전문가 KTK는

“특수경비원 신입교육은 특수경비업에 대해서 새롭게 배우는 자리임과 동시에 특수경비원에게 필요한 기본소양을 교육 받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입교육은 질적인 부분에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교육적인 부분 이외에도 국가중요시설에서 근무하게 된다는 사명감과 자부심뿐만 아니라 책임감, 윤리의식 등을 배양하는 시간이 추가되어졌으면 합니다.”

라며 교육의 질 향상과 더불어 특수경비원들의 사명감, 자부심, 윤리의식등과 관련한 교육 프로그램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현행 특수경비원신입교육은 교육대상자들에게 교육의 열의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경비원신입교육의 목적을 제대로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특수경비원들은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연관되어진 교육과목으로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제도의 개선이 요구되어진다.

## 2) 경비원 직무교육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월 6시간 이상의 직무교육이 의무적으로 시행되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다년간 근무해오고 있는 특수경비원들은 직무교육으로 인한 교육효과에 관하여 부정적인 시각이 대부분이었다.

특수경비원 직무교육과 관련하여 현장전문가 KIS는

“직무교육의 경우 경비지도사에 의해 대부분 진행되고 있는데, 보통의 경우 경비지도사가 직무교육을 해야 하는 현장이 다수이며, 법적 직무교

육 이수 시간을 지키기만 하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을 채우기 위한 교육이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뿐만 아니라, 필수교육내용에 대한 법적 명시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현재의 직무교육이 법정 규정시간을 채우기 위하여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LSW는

“경비업법상 특수경비원을 포함하여 일반경비원의 직무교육시간이 정해져 있으나 실상 현장에서 직무교육에 관한 시간을 할애하기 어려우며 일선 경찰서에서도 직무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점검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를 악용한 경비업체의 꼼수(경비업체에서 일괄 서명 등)가 빈번하게 발생되어지고 있다. 형식적인 직무교육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직무교육을 위해 매일 실시하는 직무교육보다 경비원 신입교육처럼 교육기관을 지정하여 분기 또는 반기에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판단된다.”

현재의 직무교육시스템으로는 직무교육의 목적을 이행해 나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정교육기관에서 분기별로 엄선된 교육과정으로 교육을 받는 것이 옳다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현장전문가 KKI는

“현장에 맞는 실무중심적인 교육이 필요하며, 또한 직무교육시간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필요이상으로 길게 지정되어짐.”

산업현장의 현행시스템으로는 규정시간인 6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전문가 JSM도

“월6시간이라는 교육시간은 현실적으로 현 근로기준법이나 예산, 근로자의 근무환경, 회사 운영방법 등을 고려 할 때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형식적인 교육보다 시간이 짧더라도 그 이행여부를 강화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라고 말하며, 실제적인 직무교육 이행여부 강화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이상원·박주현(2007)은 특수경비원 교육제도의 발전방안으로 전문교육기관

의 설립의 필요성을 주장 하였다.

특수경비원들이 직무교육을 위하여 매 월 6시간 이상을 교육장에 모여서 교육을 진행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형식적으로 관리/감독기관인 경찰에 보여주기 위한 서류상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현장전문가들은 얘기하고 있다. 이에 현장전문가들은 신입교육처럼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며 교육이 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 하고 있다.

### 3) 필요시 되는 교육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신입교육과 직무교육 이외로 특수경비원들에게 필요한 교육에 관해서

현장전문가 KIS는

“특수경비업무 현장별로 필요시 되는 교육에는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공통적으로 차량 및 사람 출입통제 요령, 무전기 조작 및 사용 요령과 분사기 및 개인화기 사용법, 체포술 및 호신술과 같은 교육이 필요시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장비사용 교육 및 체포/호신술 교육의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으며

현장전문가 KKI는

“특수경비업무 배치현장에 적합한 전문적이고 현장 맞춤형 교육필요.”

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고,

현장전문가 KTK는

“특수경비원은 국가중요시설의 방호 뿐 만 아니라 다수인원을 보호함에 있어 안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업무 중에는 생각지 않은 일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당황을 야기하게 됨과 동시에 막을 수 있는 위험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큰 피해로 다가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폭발물 식별요령, 거동수상자 식별, 상황대처능력)을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LSW는

“경비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실질적으로 직무나 상황에 필요한

분사기 관리요령, 소화기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상황별 대응훈련을 주기적으로 교육이 필요합니다. 경비업법에 대한 지식이나 어떤 것인지조차 모르고 교육을 오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해를 먼저 시킨 후에 교육을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라며 현재 존재하는 경비업법에 대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장비사용 및 심폐소생술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해 주었다.

김경태(2012)는 민간경비원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은 민간경비원으로 하여금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함양하고 가치관을 정립하여 경비업무를 원만히 처리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특수경비원 교육의 기본적인 목적을 위해서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겠다.

## 2. 특수경비업무의 법·제도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 1) 현행 법·제도적 문제점

현재 특수경비업무에 작용되는 법 또는 법률, 명령, 규칙 등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업무를 하면서 느끼는 문제점과 관련하여

현장전문가 LSW은

“특수경비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자 20명과 그에 따라 장비/장구를 구비해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경비업법의 내용은 현실과는 맞지 않는 부분이다.”

라고 신규허가 시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자 20명을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하는 현행 규정은 특수경비업무에 도전하려는 신규 경비업체의 입장에서 볼 때 잘못된 규정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는 관리/감독기관의 관리업무에 번거로움이 발생되더라도, 허가 후 실질적으로 특수경비원 업무 투입 1개월 전 특수경비원신임교육이수자 20명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의 개정이 필요하다.

### 2) 법·제도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특수경비원은 특수한 근무환경으로 인하여 만58세에서 정년이 연장되어 현재는

만60세 미만인 자에 한하여 근무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하고 있다.

현장전문가 JSM, KIS는

“정년이 만60세이기 때문에 아직 건강하고 더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음에도 퇴사하여야 하는 인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세밀한 건강검진을 통하여 정년을 연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라고 생명의 연장과 의학기술의 발전 등으로 만60세에도 훌륭히 업무를 수행해 낼 수 있는 인재들에게 체계적인 건강기준 및 체력테스트 등의 확인 작업을 통하여 정년연장을 주장하고 있다.

### 3. 특수경비업무 관계기관과의 상호협력적인 측면의 발전방안

#### 1) 경찰과의 상호협력관계

이인열(2011)은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주체인 특수경비원과 공항경찰의 상호의존성과 신뢰 및 협력의 관계에 있어서 장기지향성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상호의존과 신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신뢰는 상대방의 전문지식과 전문성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각 경비주체 스스로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수경비업무의 기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원과 공항경찰과의 협력이 이뤄질 때 큰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장전문가 KTK, LSW, JSM는

“대체적으로 경찰과의 상호협력적인 부분이 잘 이뤄지고 있으나, 담당 경찰의 휴가나 공결시의 경우 대체인력에 의한 원활한 업무가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경찰들의 기본적인 인식에 특수경비원들을 감독한다는 입장보다는 협력자적인 입장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라는 공통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박동균·김태민(2011)은 미국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사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가장 의미 있는 특징은 경찰과 민간경비가 서로의 존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력방안에 대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2) 경비협회와의 상호협력관계

특수경비원들은 경비협회에서 본인들의 복지 및 권리 신장과 관련하여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장전문가 LSW는

“경비협회에서는 좀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는 특수경비원 뿐만 아니라 일반경비원도 포함하여 고충을 심도 있게 들어서 걸만이 아닌 정말 도움이 되는 방향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비협회에서 특수경비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업무를 한 게 특별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라며 경비협회의 업무가 특수경비원들의 복지 및 권리 향상을 위해 체감되어지는 부분이 전무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다.

현장전문가 KKI는

“한국경비협회 관련자분들은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해서는 큰 관심도 경험치도 없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분들이 과연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혀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현장전문가 HSH도

“특수경비협회와 같은 독립적인 기구를 따로 창설하여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와 자긍심 고취 및 정보교류 등을 통하여 특수경비업무의 발전을 위한 기구로 자리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정훈(2015)은 한국경비협회가 경비원들의 복지 및 권리신장에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경비협회에 각 업무별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특수경비업무산업과 관련되어서 발전방안을 모색하거나 특수경비원들의 복지 및 권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가 설립될 필요성이 제기 되고 있다.

## 4.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에 대한 기타 의견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과 관련하여 앞에서 언급한 내용 이외의 의견을 묻는 질문에 현장전문가 KIS는

“특수경비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기본적인 처우(급여, 근무조건 등)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고 낮은 단가에 업체 계약을 하는 방식의 문제. 특수경비원의 자격 조건을 조금 더 까다롭게 하여, 특수경비원의 질적 향상이 필요 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경비업체의 경영자들은 경비원들을 소모품식의 물건으로 인식하는 부분에 대하여 인식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도급과 경영자의 인식의 문제 등을 제시해 주었다.

현장전문가 LES, LSW, JSM은

“적은 임금 및 고용불안정성과 특수경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젊은 인력의 시장 진출 감소, 비전문적인 요원들의 유입이 해결되어야 한다.”  
라고 의견을 제시해 주었다.

이상원·박주현(2007)은 우수한 자원을 민간경비분야에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안 시설물의 도급에 관계없이 특수경비근무자의 능력, 경력, 교육수준, 기술, 전문성(자격증) 유무에 따라 보수규정을 전체적으로 체계화시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시행되어지고 있는 특수경비산업의 보수규정으로는 우수한 인력의 전문적으로 업무를 수행해 나가는데 있어서 비합리적이며 숙련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 하는데 부족한부분이 많다. 우수한 인력이 다년간 근무할 수 있는 선순환이 구조로 전환 되려면 기본적인 보수규정을 체계화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김학경(2014)은 전문화·표준화된 자질검증 및 교육훈련 제도 등을 통하여 민간경비산업을 전문적으로 규제하고, 이로써 양적성장에 한계가 있는 공권력(공경비)을 실질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먼저 배양해야 할 것이다.

## V.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특수경비원들이 경비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인지하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특수경비업무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연구의 방법 및 결과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특수경비원들은 현재의 경비원 신입교육 제도가 특수경비업무 실무와 관련된 교과목으로 재편성하여 60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

각하고 있다.

둘째, 특수경비원 직무교육도 국가에서 관할하는 교육기관을 통하여 3개월에 9시간 정도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전환하되, 교육이수여부관리에 중점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셋째, 특수경비원들에게는 실무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프로그램과 능력 있고 전문적인 강사진을 통하여 분야별로 양질의 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넷째, 경비업법에 규정되어 있는 특수경비원의 정년은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 상향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특수경비업체와 경찰 서로간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여섯째, 특수경비업무와 관련한 발전방안과 특수경비원들의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특수경비협회의 창설이 요구되어진다.

이상의 결과만으로 우리나라 특수경비업무 발전방안을 논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특수경비업무는 그 산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요인들에 의하여 서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를 좀 더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특수경비업자, 경찰서 경비업담당자, 경비협회 실무자, 특수경비업무시설주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변수의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국내문헌

- 김경태(2012) 민간경비 교육의 문제점 및 발전방안. 경찰학논총, 7(2), 223-241.
- 김태환·박옥철(2005) 한국 민간경비 실태 및 발전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9, 69-98.
- 김학경(2014) 제3의 탈경찰화와 민간경비원의 권한확대 : 영국의 지역사회 안전인가제도 중심으로. 치안정책연구
- 박동균·김태민(2009) 특수경비원 신입교육훈련의 실태 및 개선방안. 한국치안행정논집, 6(2), 27-52.
- 박동균·김태민(2011) 미국 경찰과 민간경비의 상호협력.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8, 209-228.
- 박옥철·김태환(2011) 초임 특수경비원의 직업사회화 과정 분석. 한국재난정보학회, 7(4), 316-327.
- 백승민(2014) 한국 민간경비 제도적 실태와 발전방안 연구. 용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석청호(2010) 협력치안체제구축과 민간경비의 역할. 한국경호경비학회지, 24, 67-90.
- 양미진·이동훈·고홍월·김영하·남현주(2012) 현장전문가가 지각한 다문화청소년 상담의 특성에 대한 질적분석. 상담학연구, 13(3), 1181-1209.
- 이상원·박주현(2007) 특수경비제도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3, 323.
- 이인열(2011) 특수경비원과 공항경찰의 상호의존성 지각에 따른 관계결속 및 성과.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재국(2012) 북한군 특수부대 테러 대비 특수경비원의 방호능력 발전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11(3), 197-219.
- 조민상·오윤성(2015) 국가중요시설 특수경비원 관리방안에 대한 연구:핵 안보시설을 중심으로. 11(2), 275-297.
- 최은하·유영재·이상빈(2008) 특수경비원 교육훈련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16, 1-13.
- 하정훈(2015) 신변보호업무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경호경비학회지, 44, 199-223.
- 경비업법 제14조 제8항  
 법률 제6467호  
 법률 제14071호

【Abstract】

## A Study on development of special security service

Ha, Jung-Ho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development of the special security business plan based on the problem that guards are now aware of special security service. In order to achieve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we analyzed the data after expert survey and interview conducted by seven experts engaged in special security services more than 10 years. The guard who perform special security service proposed a development plan of special security services as follows.

First, the current education system for new employees' training is required to improve the educational program of 60 hours in subjects related to special security duties by reorganization

Second, the special security service training for guards also appropriate to switch to 9-hour training program for three months through an educational organization controlled by country.

Third, the special security guards should be proceeding the practical programs required in the field and quality education in the different section by competent and professional instructors.

Fourth, the retirement age for special security guard stipulated in the Security Services Industry Act that needs to be readjusted upward by considering the social environment.

Sixth, there needs to be organized the Special Security Association for development associated with the special security service and to protect the rights of special security guards.

**Key words** : special security service, special security guards, private security, The security industry law, expert